

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운영기관 모집공고

『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』의 운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3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<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>

<사업 일정>

신청 · 접수기간	선정평가	운영기관 협약
'24년 11월 18일 ~ '24년 12월 12일	'24년 12월	'25년 1월

<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변경 사항> (□는 생략 가능)

구 분	사업공고 주요변경 사항	
	2024년도	2025년도
접수시기	• '24년 1~2월	• '24년 11~12월(약 2개월 조기 추진)
선정분야	• 5개 분야 이내	• 5개 분야 이상
지원규모	• 70억원, 35개 내외 - 협업부처 분야 별 14억원, 7개 과제 이내로 배분	• 300억원, 150개 내외 - 정책의 중요도, 연계사업의 규모 및 연계성,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분
가점	최대 5점	가점삭제
사업관리 변경사항	중간 점검 ▶ 구축 진행 ▶ 최종 감리 ▶ 완료 점검 ▶ 집중 A/S ▶ 최종 평가	중간 점검 ▶ 구축 진행 ▶ 최종 점검 ▶ 최종 평가 ▶ 집중 A/S ▶ 최종 재평가
중간점검	•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	•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(협약후 3개월 내)
최종점검	• 최종감리 후 완료점검 진행	• 최종점검으로 통합
집중A/S	• 집중 A/S기간 6개월 필수 수행	• 최종평가결과 "보완" 시 집중A/S 수행 및 최종재평가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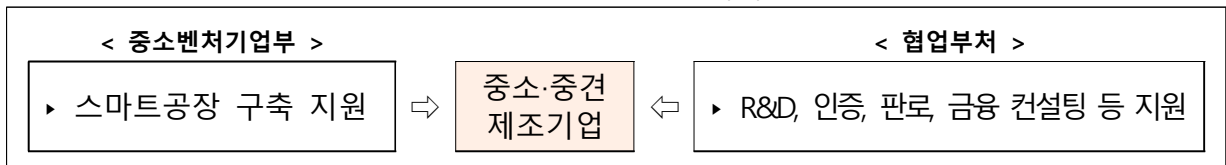
1. 사업 개요

※ 본 공고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, 분야별 운영기관 선정 이후 중소·중견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는 추후 실시 예정

□ 사업개요

-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분야의 스마트화 역량 집중

< 부처협업형 협업체계(안) >



□ 모집분야

-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현안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
 - (전략산업 분야)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원전, 방산 등 제조업종 분야
 - (현안해결 분야) 산업안전, 의약품, 식품안전, 산업보안 등 제조업종 분야

□ 지원규모

- (사업규모) 300억원, 150개 내외 * '25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- 협업분야별 정책의 중요도, 연계지원사업의 규모 및 연계성,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
- * 기업 모집·선정·관리 등에 필요한 기관 운영비 지원 (구축비의 5% 이내 책정)

□ 지원내용

- (중소벤처기업부) 분야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고도화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지원
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입 지원

- (지원조건) 총사업비 50%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

지원유형	지원기간	지원한도	지원비율	구축목표수준*
고도화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50% 이내	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
고도화(동일수준)	최대 6개월	최대 0.5억원		

※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
○ (협업부처) 협업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R&D·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

- 협업부처 연계지원사업 예시

구분	내용
산업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스마트공장) 수기로 관리하는 사출공정, 자재.출하.품질관리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정확.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○ (안전보건관리 지원) 근로자의 끼임, 말림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사출공정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 <p>*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및 교육</p>
식품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스마트공장) 크림, 소성 이물검출 등 CCP* 공정데이터를 자동수집하여 스마트 HACCP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 <p>* 식품 안전에 대한 위험의 방지, 제거 또는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거나 품질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, 단계 또는 과정.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스마트 HACCP 기술지원) 중요공정별(CCP) 자동모니터링 구축방안,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HACCP 관련 사전·사후 기술지원

2. 신청기간 · 방법 및 자격 등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 기간) '24. 11. 18.(월) ~ '24. 12. 12.(목) 17시까지

☞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권고 (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·제출·수정 불가)

○ (신청 방법)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 신청

☞ 신청경로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→ 사업안내 → 모집공고

* 각 운영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수

* 신청 시 '일반사용자'와 '전문가' 중 '일반사용자'를 선택한 후 '도입기업'을 선택

- (제출 서류)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

구 분	제출서류 목록
제출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-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운영기관 수행계획서 -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공고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) 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- 관계부처 추천서(공문)

*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의 '알림/참여마당-자료실' 참고

□ 신청 자격

- 협업부처에게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*받은 공공·민간기관
 -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의 R&D·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**

* 협업부처 추천서(공문)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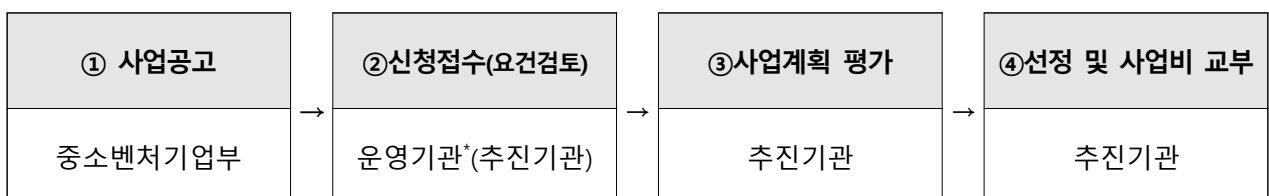
**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,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·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

3. 선정 절차

☞ 평가, 선정,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절차 (평가기준 붙임 참고)

- (사업계획 평가)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, 사업 연계성, 사업기획 및 목표의 적정성,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, 스마트공장 수요발굴 역량 등
- (선정 및 사업비 교부)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기관 및 예산배분 확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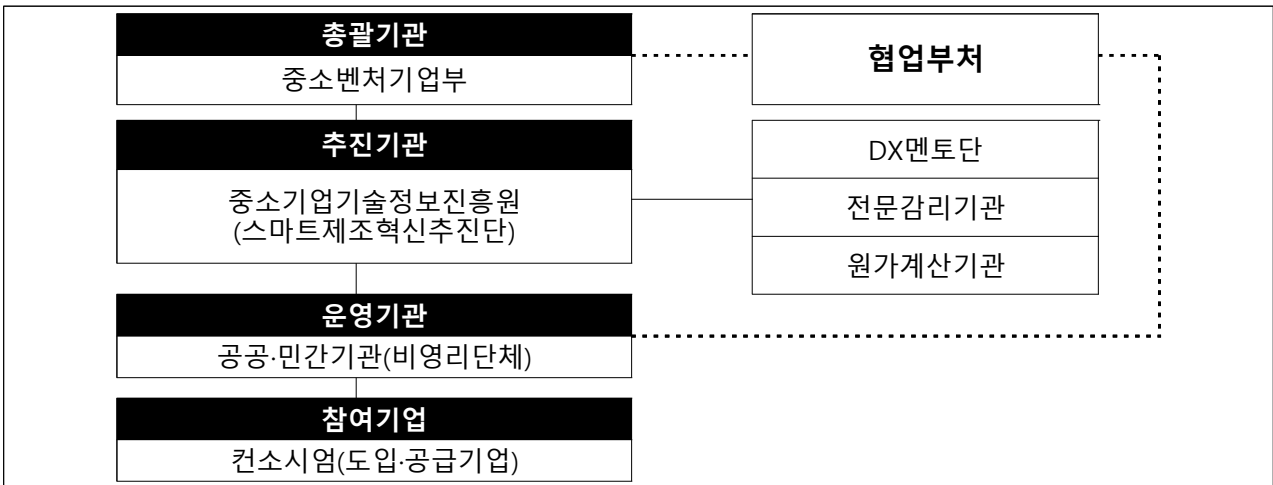
4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(제2023-80호, '23.8.7)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

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담당 기관

구분	역할
중소벤처기업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
협업부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기관 추천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위원회 등 구성·운영 • 지원분야별(운영기관별) 스마트공장 보급목표수 배정 • 운영기관 선정, 사업비 지급 * 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기관 운영비 지원 (구축비의 5% 이내 책정) • DX멘토단, 전문감리기관, 원가계산기관 운영
운영기관 (공공·민간기관(비영리단체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, 구축현황 점검(중간·완료점검 등), 사후관리, 사업비 집행 (정부지원금 위탁운영),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등 *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과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가능
참여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공장 구축 및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이행 * 도입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한 경우 공급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불필요

5. 문의기관

□ 담당기관 연락처

담당 기관		문의 사항	전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제조혁신과)	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	044-204-7270
추진기관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	044-300-0954, 0961

※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사항 : 044-998-0418

☞ 관련 웹사이트
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: <http://smart-factory.kr>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(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) : http://pf.kakao.com/_l1fqd

□ **선정방법**

- 운영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,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전략 및 운영기관 역량 등에 대한 대면평가 진행

□ **사업계획 평가표**

구 분	평가 항목	배점
사업전략 적정성 (70)	-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	20
	-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- 기업지원서비스의 사업규모 또는 투자계획	20
	- 사업계획, 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	20
	-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	10
운영기관 역량 (30)	- 스마트공장 수요발굴 역량	15
	- 사업운영(홍보, 사업추진절차 이해도, 사업·사후관리 등) 및 성과도출 계획	15
합 계		100